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수칙」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 적용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적용시점 2023.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23. 1.30.

남원중앙초등학교장 김동오